

Deloitte Insights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 특집호



금융권, 제도 변혁의 혼란 그 이후까지도 대비하라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
Deloitt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Deloitt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 리더 메시지



최근 금융산업의 동향 중 가장 중요한 화두는 데이터 경영과 규제에 대한 대응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사업기회를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원가절감을 통한 금융소비 수요 확대를 위해 고객 행동 분석과 정교한 사업원가 분석은 이제 필수적 경영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 서비스의 초과 공급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으며, 글로벌차원의 각종 규제와 회계제도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규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요구되어 온 모든 금융사의 경영관리 요구 사항이지만, 지금은 어느때 보다 그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보험사는 2023년부터 IFRS 17을 도입하고, 새로운 자본규제 제도(K-ICS)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권은 최근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채택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 구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상보다 길게 이어지고 있는 전 세계적 COVID-19 팬데믹은 기업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유연하고 예측력 높은 경영관리가 필요함을 알게 해 주었고, 이를 위한 핵심 요소가 데이터라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당연한 명제입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금융사업본부는 데이터 경영과 규제 대응에 관한 중요성 인식 및 그 대응 방안에 대하여 고객사들과 함께 고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이번호에서는 IFRS 17 준비에 필요한 사항과 LIBOR 금리 고시 중단,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딜로이트의 분석 내용을 담았습니다.

모쪼록 관련 역량과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한 금번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 특집호의 내용들이 한국 금융산업 및 고객사들의 성장과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 8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 총괄리더 신병오

Deloitte Insights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 특집호

발행인 홍중성
편집인 김사현
발행일 2021년 08월 03일
발행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서울국제금융센터 One IFC 빌딩 9층, 안전회계법인
대표번호 02-6676-1000
대표메일 krinsightsend@deloitte.com
등록번호 영등포, 마00069 (2021년 4월 1일 등록)
발행소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Financial Services Industry Insight

최신 금융산업 동향과 비즈니스 이슈에 대한 한국 딜로이트 그룹 전문가들의 인사이트

IFRS 17 도입 최종 점검 사항 신병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 총괄리더	04
LIBOR 금리 고시 중단과 대응 김경호 파트너	14
보험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고찰 허호영 파트너 / 한유기 파트너	32
보험업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진화 석혜정 파트너	46

01

IFRS 17 도입 최종 점검 사항

신병오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 총괄리더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보험사 경영의 대변혁을 가져오게 될 IFRS 17 도입이 임박했고, 대부분의 보험사는 이에 대한 결산시스템 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IFRS 17의 정착을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현시점부터는 이러한 과제와 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은 기간 동안 IFRS 17 정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채 1년도 남지 않은 실질적인 IFRS 17 준비 기간

새로운 보험회계기준인 IFRS 17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예정되어 있다.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실질적으로 IFRS 17을 적용하는 시기는 이보다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비교 재무공시를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결산이 수행되어야 함

기준서 상의 첫 번째 비교공시는 상장보험사의 경우 2023년 1분기부터다. 즉 2022년 1분기 재무제표에 IFRS 17을 적용하여 2023년 1분기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비교공시 목적의 재무제표를 2023년에 준비하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IFRS 17에서 요구하는 회계요건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2023년에 2022년의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2022년부터 결산이 수행되어야 신뢰성이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는 곧 2022년 1월 1일부터는 결산시스템을 통해 IFRS 17로 결산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2** IAS 18에 의해 사전 공시를 2022년 중 수행하여야 함

중요한 회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IAS 18에 의해 사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IFRS 9이 도입된 과거의 경우를 살펴보면, 2018년 도입일 이전인 2017년에 거의 결산에 준하는 회계변경 효과를 공시하였다. 따라서 보험사들은 2022년 중(반기 검토부터 예상)에는 현재 회계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 공시와 더불어 IFRS 17이 적용되었을 경우 자본 및 손익에 미치는 효과를 상세하게 주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3** IFRS 17이 적용되는 시작 금액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확정됨

IFRS 17 적용으로 인한 회계변경효과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의 자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리고 이때 결정된 자본 및 부채의 크기는 향후 수십년간 보험사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IFRS 17 최초 적용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경영 의사결정 사항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외부 정보이용자들에게도 지대한 관심사항이다. IFRS17 최초 적용 효과에 대한 정보 공개 요구는 2022년 초부터 정보 이용자들로부터 크게 증가할 것이다. 감독당국은 IFRS 17 최초 적용과 관련한 회계정책 결정 과정을 요구할 것이고, 모회사 및 주요 주주들은 IFRS 17 도입으로 인한 재무효과와 향후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다. 이에 대한 고민은 현재부터 2021년 말까지 고려되어 2022년 초에는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확정된 IFRS 17 회계변경효과를 차후에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된다면 이해관계자들에게 재차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회계변경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실상의 IFRS 17 시작 금액은 2022년 초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장 먼저 확인할 사항인 IFRS 17 결산시스템 및 재무제표의 정합성 점검

IFRS 17에 의한 재무제표 또는 재무영향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2022년부터 대외 공시가 시행될 예정이며, 공시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많은 보험사들은 아직 IFRS 17 재무제표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을 확인한 바가 없다. 일부 보험사에서 자체적인 도상훈련을 통해 결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IFRS 17 결산 결과를 감독당국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하고, 주주들과 소통하며 심지어는 적절한 감사의견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까지 확인한 상태는 아니다. 즉, IFRS 17 결산시스템 전반에 대한 합리성과 동 시스템에서 산출된 결산 결과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IFRS 17 결산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누락, 중복없이 처리되는지 확인

IFRS 17 결산을 위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데이터들이 취합되고 가공된다. 보험계약 기본정보, 매일 매일의 거래 정보, 각 계약에 적용되는 가정 및 모델 정보, IFRS 17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부채와 손익을 생성하는 정보 등 많은 개별 시스템에서 정보가 연계된다. 정합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개별 시스템에서 연계된 정보가 완전하게(누락 없이) 또 중복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 각각의 개별 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정보는 전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만 데이터 처리 및 가공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IFRS 17 결산을 위해서는 개별 계약정보를 건건이 다루어야 하는데, 정보를 처리하여야 할 양이 방대하고, 처리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연계된 데이터의 처리 건수, 데이터의 속성, 핵심 정보(보험료, 가입금액 등) 일치 여부, 금액 합산 일치 여부 점검이 필요하다.

2

IFRS 17 회계정책 및 부채산출 방법을 회사의 공식 문서로 등재

IFRS 17 결산에는 많은 판단과 추정이 필요하며, 회계정책에 대한 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자본과 손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결정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정책에 반영하여 문서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변경은 매우 엄격한 절차를 통해 통제되어야 한다. 향후, IFRS 17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나 감독 당국의 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질 사항은 회계정책, 가정, 모델에 대한 변경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가 여부이다. 따라서, 회계정책 및 가정과 모델에 대한 내용을 담은 부채산출 방법서는 회사의 공식문서로 등재되고 이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 승인에 준하는 매우 엄격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IFRS 17 재무제표가 공식적으로 등재된 회계정책서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3

IFRS 17 결산 금액에 대한 합리성 검증

데이터가 정확하게 상호 연계되고 사전에 합리적으로 마련한 회계정책 및 부채산출 방법대로 정보가 생성되었다는 확신이 들면, 다음 단계에서 점검하는 것은 전반적인 재무제표 숫자에 대한 합리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회계변경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계 변동을 유발하는 항목에 대한 재무효과 차이를 분석하는 기법을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IFRS 17은 기존의 보험회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 분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불가능하다. 즉 현행 IFRS 4 부채 및 손익을 IFRS 17의 부채 및 손익으로 항목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대체적인 방법을 통해 숫자에 대한 정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 현행 회계기준에서의 준비금, 부채적정성평가 금액과 IFRS 17 보험부채를 비교한다. 비교는 가급적 개별계약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FRS 17에서 정한 포트폴리오 내에 속해 있는 개별 계약들이 이러한 비교 결과가 일관성을 가지는지를 검토한다.
- ☑ 상기 비교사항 중에서 IFRS 4와 IFRS 17에서 가장 크게 차이를 보이는 3가지 사항(약관대출, 신계약비, 할인율)에 대한 차이 분석을 실시한다. 3가지 사항에 대한 차이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 ☑ 포트폴리오 별로 표본을 추출한다. 표본은 가급적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추출한다. 추출된 표본에 회사가 공식적으로 등재한 회계정책, 가정, 모델을 적용하여 재계산을 수행한다. 재계산한 결과와 시스템에서 산출된 결과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동 결과에 대해 통계적으로 정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 ☑ 부채 변동 사항이 손익계산서에 회계적으로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부채 변동 사항을 독립적으로 확인하고 손익계산서 상의 항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 손익 항목과 기말 부채에 대한 분석적인 검토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이자비용이 현행 시장 이자율과 일관성을 보이는지, 중요 상품별 수익성(CSM)은 유사한 상품 또는 과거와 비교하여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지, 가정 또는 할인율의 변동 효과가 사전에 예측한 민감도 분석 범위 내에서 나타나는지 등이다.
- ☑ 분석적 검토를 통해 확인되는 특수사항(예: 다른 유사한 상품 또는 과거와 비교하여 금액이 비정상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은 개별 계약으로 추적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차이의 원인이 합리적인지를 확인한다.

정합성 확인 후 IFRS 17 결산 결과에 대한 소통 및 관리 방안 마련

IFRS 17 결산시스템과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결산 결과를 경영진이 이해하지 못하면 향후 IFRS 17 하에서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없다. 그리고 곧바로 증가할 외부의 공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따라서, IFRS 17 결산과 경영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외부 정보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준비는 크게 3가지가 필요하다.



1 IFRS 17 재무항목을 경영 관점에서 분해

IFRS 17 상의 손익은 보험부채의 기초시점부터 기말시점까지 변동(증가/감소) 내역이 주를 이룬다. 이에 대한 변동사항을 상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IFRS 17 손익을 이해하는 시작점이다. 계리가정 변동 때문에 부채 또는 손익이 변동하면 어떠한 가정 변동이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시장금리의 변동도 마찬가지이다. 결산기 도중에 현금흐름 모델 또는 회계정책이 변경되면 각각의 포트폴리오에 어떠한 재무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부채 변동 및 손익의 중요사항은 과거와 비교할 수 있어야 하고, 채널, 상품, 지역 수준 등 경영관리 목적으로 분해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IFRS 17의 관리회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IFRS 17의 관리회계는 다음아닌 IFRS 17 재무회계(공시 목적회계)를 경영관리 목적 별로 상세하게 분해하는 것이다.

2 IFRS 17 상 중요 경영관리 사항 도출 및 외부 소통 목적 보고 체계 수립

IFRS 17의 가장 중요한 경영관리 사항은 수익성 및 안정성이다. 먼저 수익성 측면을 살펴본다. 수익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질 사항은 계약서비스마진(CSM)이다. 적절한 CSM은 미래 보험손익을 결정하며, 동시에 자본변동성의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CSM을 통한 수익성 관리 지표의 예는 다음과 같다.

$$\text{수익성} = \frac{\text{CSM총액}}{\text{미래현금유입(보험료)현가총액}}$$

다음으로 중요한 관리사항은 자본 및 손익의 변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당기손익 측면에서는 계리가정에 대한 예상과 실제차이가 얼마나 변동성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계리가정 중 회사가 통제 가능한 부분과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금융가정은 회사가 통제하기 어렵고, 계리가정은 회사가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계리가정 중에서도 해지율, 약관대출 이용률 등은 금융가정과 계리가정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결정된다. 따라서, 관리를 위해서는 가급적 이러한 가정들도 상세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ext{변동성} = \frac{\text{관리항목 별 당기 예측액 (수익)}}{\text{관리항목 별 당기 발생액(비용)}}$$

중요한 경영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정보이용자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먼저 IR을 담당하는 책임자와 부서부터 IFRS 17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각 재무결과가 회사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도 필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고체계도 갖추어야 한다.

IFRS 17 최초적용에 대한 경영진의 의사결정 및 사전 공시 준비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이 필요하다.

- 1 IFRS 17 재무영향 시뮬레이션 및 회계정책 결정**

IFRS 17 최초적용은 회사의 자본 및 미래의 장기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IFRS 17에는 다양한 회계선택조항이 있다. 포트폴리오 결정(회계단위), 회계모형 결정(일반모형 또는 변동수수료 모형), 할인율 결정(상향식 또는 하향식), 할인율 영향 반영(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 위험조정회계처리(할인율 효과 구분 또는 미구분), 최초적용 시 CSM 산출(수정소급법 또는 공정가치법) 등이다. 각각의 결정은 IFRS 17 전환 시에 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향후 20년 이상 당기손익 및 변동성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철저하고 신중한 분석을 통해 상기 사항이 결정되어야 한다. 한번 결정한 사항은 변경이 거의 어렵기 때문에 경영진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재무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 2 최초적용 효과에 대한 외부 검증**

IFRS 17 최초적용 시 CSM 산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계약에 대한 공정가치평가가 필요하다. 현재 금융감독원의 요구사항을 예측하더라도 최소 2019년 또는 2018년 이전의 보유계약 전체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가 요구된다. 회사가 아무리 합리적인 데이터를 정비하고 정보를 산출하고 자체 검증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IFRS 17의 최초적용 효과가 가지는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외부에서 동 공정가치금액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는 외부감사인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예측된다.
- 3 사전 공시 수준의 결정**

2022년 중에는 IFRS 17 전환에 대한 효과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공시하여야 한다. 자본 및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수준까지 공시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공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공시 수준은 업계 전체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결산에 준하는 대비 필요

앞서 언급된 준비 사항들과 더불어 실전 모의고사가 필요하다. 점검 사항은 3가지로 요약된다.

- 1 IFRS 17 하에서 결산 일정 준수 여부를 확인**

IFRS 17 도입으로 재무제표 체계가 크게 변동한다. 대량의 데이터를 다양한 가정과 추정을 통해 수십 단계의 회계처리 절차를 거쳐 재무제표가 작성되기 때문에, 결산일정이 현재 수준에 비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많은 보험사들은 상장회사이거나 상장 모회사에 연결대상이 되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목표 결산 기일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실제 결산을 실천처럼 수행하고, 주주총회까지 도상 훈련을 하는 전체 결산 절차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시행착오를 줄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결산이 지체된다면 어떠한 프로세스를 개선하여야 할지, 또는 어떠한 인력을 보충하여야 할지 미리 파악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2 외부감사에 대한 준비(내부회계관리제도 및 Audit trail)**

IFRS 17 도입으로 인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프로세스가 크게 변하며 재무보고 리스크 요인도 대폭 증가한다. 따라서, 감사에 대비하여 구비할 첫 번째 사항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이다. 회계정책, 가정, 모델이 사전에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공식 문서로 등재되며, 변경에는 엄격한 통제가 따르는지 확인하는 내부 장치가 설계되고 운용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IFRS 17 재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 장치가 있는지, 데이터의 정합성은 확보가 되는지, 산출된 재무결과를 독립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는지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되고 운용되기 위해서 회사는 일련의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데이터 정합성, 회계정책 및 가정의 통제, 재무결과 검증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이상항목을 추적하여 그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일종의 감사 증거(Audit trail)이라고 부른다. 이는 결산부서가 IFRS 17의 공시의 최종책임을 지는 부서로서 최종결산 전에 모든 일련의 회계처리 과정이 적정하다는 것을 경영진의 관점에서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해 검토하였다는 의의를 부여한다. 또한 외부의 감독, 검사, 외부감사에서 요구하는 감사 증거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부분으로 규제 사항의 핵심 요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 IFRS 17 도입을 위해 보험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자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면, 다음 번 발간될 금융산업특집호에서는 IFRS 17 도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각종 법규와 규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02

LIBOR 금리 고시 중단과 대응

김경호 파트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LIBOR 산출 중단 진행 상황

LIBOR 금리 산출 중단 시점인 2021년 말까지 이제 약 4개월이 남았다. 말 그대로 LIBOR 금리 산출 중단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2017년 7월 당시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의장인 앤드류 베일리는 2021년 이후에는 FCA에서 소속 은행들에게 LIBOR 금리 시세 제출을 요청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고, 이후 2019년에는 2021년 이후에 일부 패널 은행이 LIBOR 금리 시세를 제출하더라도 EU 벤치마크법(BMR)을 통해 LIBOR 금리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LIBOR 금리 산출 중단 연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2020년 3월 영란은행(Bank of England) 및 FCA는 COVID-19의 글로벌 확산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금융개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LIBOR 지표금리 전환은 2021년 말까지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다만, 올해 3월 5일 LIBOR 운영사인 IBA(ICE Benchmark Administration)는 O/N 및 1·3·6·12개월 USD LIBOR에 대해서는 고시 중단 시점을 2023년 6월 이후로 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통화별 LIBOR 금리 산출 중단 시점 연기가 아닌 중단 시점 확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FCA는 IBA의 지정된 일자 이후부터 LIBOR 금리는 고시되지 않거나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한 때 소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라고 불리우며 수많은 금융상품의 준거금리로서 사용되어 왔던 LIBOR 금리와의 이별을 이제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LIBOR 금리 산출 중단은 다양한 관련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이에 대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요 경제 주체 중 하나인 각 국가의 정부는 통화별 LIBOR 금리 등의 기존 지표에서 SOFR, SONIA 등 각국의 정책에 따라 대체 지표를 개발하여 LIBOR 금리 산출 중단에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주요국 지표금리 개선 현황>

구분	국가	기존 지표	지표명	대체지표		
				성격	선정시기	산출기관
단일 지표 체제	미국	LIBOR	→ SOFR ¹⁾	국채담보 익일물 RP 금리(RFR)	17.6월	뉴욕연준
	영국	LIBOR	→ SONIA ²⁾	익일물 무담보금리(RFR)	17.4월	영란은행
복수 지표 체제	유로지역	EONIA ³⁾ LIBOR	→ ESTR ⁴⁾	익일물 무담보금리(RFR)	18.9월	ECB
		EURIBOR ⁵⁾	→ 개선 EURIBOR	은행간 호가금리	-	EMMI ⁸⁾
	일본	LIBOR	→ TONA ⁶⁾	익일물 무담보 콜금리(RFR)	16.12월	일본은행
		TIBOR ⁷⁾	→ 개선TIBOR	은행간 호가금리	-	일본은행연합회

1)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2) 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3) Euro Overnight Index Average(익일물 은행간 무담보금리)
 4) Euro Short-Term Rate
 5) Euro Interbank Offered Rate
 6) Tokyo Overnight Average Rate
 7) Tokyo Interbank Offered Rate
 8) European Money Markets Institute(유럽자금시장협회)

각국의 지표금리 개혁은 독자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상호 공조를 통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은 각국이 공유할 수 있는 표준원칙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의 '금융벤치마크에 관한 원칙'이다. 현재 G20의 요청에 따라 이러한 국제적인 원칙에 기반하여FSB(Financial Stability Board)의 주도 하에 지표금리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FSB는 LIBOR · EURIBOR · TIBOR를 국제 금융 시장의 핵심 지표금리로 선정하였으며, 개혁의 주된 방향은 지표금리의 조작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실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복수 지표체제'이다.

복수 지표체제는 금융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과 채권 등과 같은 현물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의 신용

위험이 포함되어 있는 기존의 호가 금리인 IBOR를 개선(소위 'IBOR+'라고 지칭함)하여 사용하고, 파생거래에 대해서는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새롭게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물론 모든 국가가 복수 금리체제를 갖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단일 금리체제를 도입하여 현물과 파생거래 모두에 대해 RFR인 SOFR(미국)과 SONIA(영국)를 사용하게 된다. 복수 지표의 경우 단일 지표에 비해 시장이 불안정한 경우에도 복원력이 높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지표금리를 조작하려는 유인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생거래에 대해 RFR을 사용하게 하는 개선 방향은 과거 리보사태의 주요 원인이 IBOR와 연계된 파생상품 계약의 포지션을 은행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작하고자 하는 현실적인 유혹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다. 이에 각국은 패널 은행이 정할 수 있는 호가 금리인 IBOR 대신 시장에서 산출되는 RFR을 대체지표로 선택하였다. 앞서 등장한 지표인 '주요국 지표금리 개선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주요국에서 선택한 RFR은 무담보 금리 또는 Repo금리라는 차이는 있으나 모두 익일물 금리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는 익일물 금리가 유동성이 가장 크고 금리 결정 시 자금차입자의 신용위험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국내 역시 지난 2월 26일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산하 대체지표개발 작업반이 국내 무위험지표금리(RFR)로 '국채 · 통안증권 RP금리'를 선정하였고, 동 RFR의 산출 및 공시는 현재 RP 금리를 산출하고 있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하기로 하였다. 동 RFR은 LIBOR 산출 중단에 따라 제정되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거래지표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요지표 산출이 중단된 경우에 대비하여 적용하는 비상금리 또는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거래의 신규 준거금리로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 대체지표의 개발 움직임은 그간 나-

BOR 금리를 사용했던 다양한 유형의 금융계약 준거금리가 RFR로 대체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IBOR 금리에서 RFR로의 지표금리의 대체 과정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준비과정이 요구된다. 이중 가장 직접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기존계약 및 신규계약 상의 LIBOR 연계 금리 관련 계약 조건의 보완 또는 수정이다. LIBOR 금리는 2021년 말 이후부터 산출이 중단되는 것이 확정되었으며 주요 국가에서 지표금리를 RFR로 결정하였으나, 시장은 불가피하게 과도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동 과도기 기간에 그 만기가 2021년 말 이후인 신규계약이 체결될 경우, 해당 계약은 기존 LIBOR 금리와 LIBOR 금리 산출 이후에 사용될 RFR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LIBOR 금리 고시 중단 시 사용될 대체금리(fallback rate)를 반영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한편 만기가 2021년 말 이후인 기존 계약에도 대체금리를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계약 중 대체금리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수립하는 과정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FSB의 지표금리 개선 방향 - 복수 지표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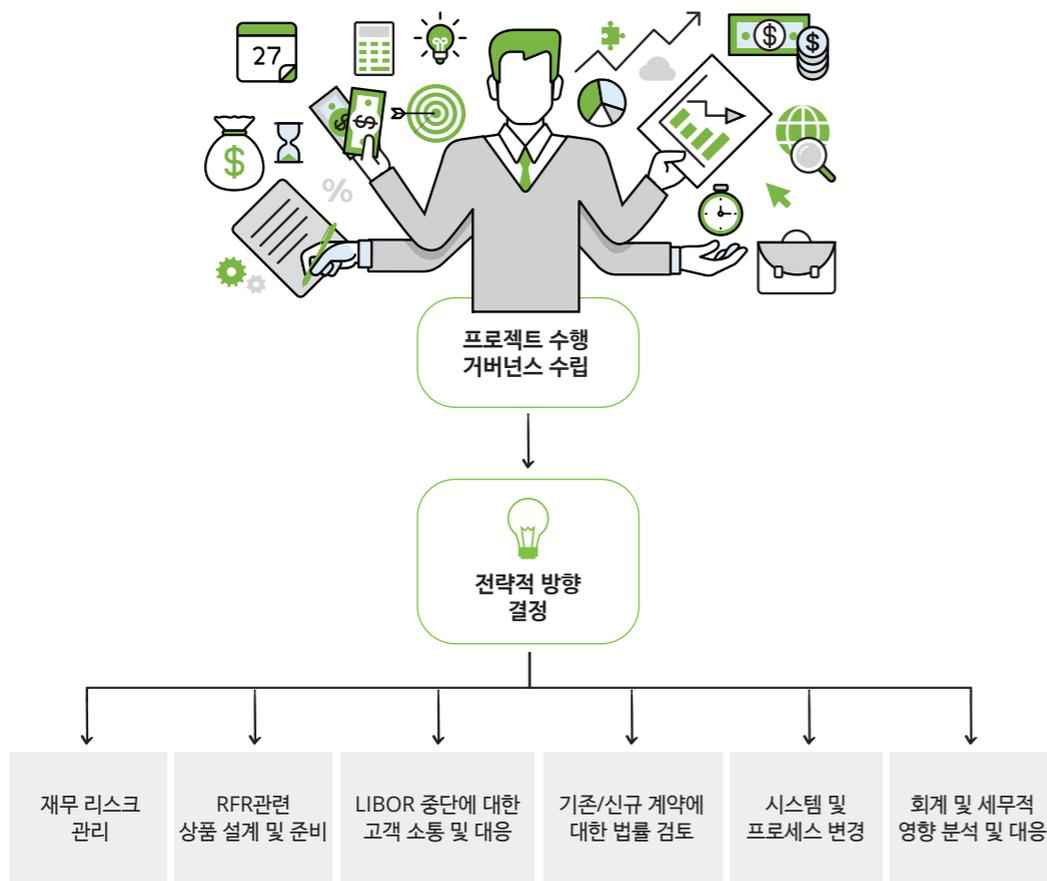


금융기관 대응 현황

각국 정부와 더불어 LIBOR 금리 산출 중단과 관련된 중요한 경제 주체 중 하나인 금융기관 역시 다양한 부분에서 불가피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 Citi, Standard Chartered Bank 등 다수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이미 상당 기간 동안 외부 컨설팅 기관으로부터 회계, 법률, 조직 구조, 업무 프로세스 등 LIBOR 금리 산출 중단으로 인해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

문 서비스를 받아오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일반적으로 LIBOR 금리 산출 중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조직의 거버넌스를 수립한 뒤, 각 이슈별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대응 업무의 진행 방향은 은행의 여신, 자금, 파생, 리스크 등 주요 부서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LIBOR 중단 대응 업무 흐름 예시>



1 2020년 10월 26일 회의

그러나 글로벌 금융기관에 비해 국내 금융기관의 LIBOR 금리 산출 중단 대응 방식은 다소 소극적인 상황이다. 물론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다양한 자료 및 정보가 제공되고 있고, 각 금융기관별 대응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나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며 자체적으로 개별 이슈에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신 및 자금 파트는 기준 금리 수립 및 이자 계산 등의 이슈, 파생 및 리스크 파트는 금리 변동에 따른 금융상품 평가 등의 이슈 등을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필요 데이터 확보, 관련 프로세스 및 시스템 변경 등은 여전히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기의 내용은 은행연합회의 '리보금리 대응 TF' 회의 결과¹⁾의 일부이다.

- ☑ 리스크: 리보금리 대체 시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따른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필요
- ☑ 소비자보호: 대고객 안내 시행 일정 확인 및 추후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대응 방안 논의 필요
- ☑ 대출: Fallback 포함 대출약정서 마련 및 추진 방안 검토 - 다만, 추후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시 동 약정서만으로 대응 가능한지 여부 등을 추가 검토할 필요
- ☑ 채권: 산업·수출입은행의 SOFR 연동 채권 발행 사례 공유
- ☑ 회계: 위험회피회계 관련 사전 정비사항 공유 및 그 외 회계 이슈 파악 필요
- ☑ 해외동향: ISDA 표준계약서 수정안 및 프로토콜 출시 일정 공유 등

상기 사항들에 대한고민과 노력은 각 금융기관의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체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은 각 부서(function)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상호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서로 간 충분한 논의와 영향 분석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기관 내부의 각 부서별로 각기 예상되는 개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사 차원에서 이를 통합하고 조율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 역시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현재 많은 금융기관들이 LIBOR 금리 산출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TF를 통해 전사 차원에서 LIBOR 금리 산출 중단 대응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정 부서 중심으로 구성된 TF의 특성상 각 부서의 다양한 이해 관계를 조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LIBOR 금리 산출 중단 대응 업무는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금융기관이 보유 중인 LIBOR 금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계약들은 비금융기관 뿐 아니라 법인이 아닌 개인과의 계약도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계약에서 특히 LIBOR 금리 산출 중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각 계약 당사자별로 상이하며, 이러한 이해도의 차이로 인해 계약 상대방의 대응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계약 당사자 간의 대응 속도 차이는 금융기관의 LIBOR 금리 산출 중단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는 잠재적인 이슈가 된다. 내부적인 노력과 더불어 고객을 대상으로 LIBOR 금리 산출 중단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편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방법론 등이 시장에서 유효한지, 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 절차도 반드시 필요하다. 대체금리의 적용은 각 금융기관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해외 금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거래 상대방과의 문제이며, 각 방법론이 글로벌 수준의 업무 절차 진행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국내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

LIBOR 금리 산출 중단에 따른 회계적 이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많은 금융기관들은 LIBOR 금리 산출 중단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의 TF를 운영 중에 있다. LIBOR 금리 기반의 거래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여신, 자금, 파생 부서 등에 속한 TF 구성원들이 전사 차원의 이슈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자체에서 발생하는 유관 이슈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며,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LIBOR 금리 산출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를 관련 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하는 회계 부서는 상대적으로 예상되는 이슈가 없거나 이러한 변화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이는 유관 프로젝트 진행 시 TF 구성원들과의 논의 과정이라는 필자의 한정적인 경험을 통해 도출한 결론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 하지만 LIBOR 금리 중단과 관련된 회계 이슈가 그동안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관련 회계 기준서를 바탕으로 이에 대해 보다 상세히 기술해 보고자 한다.

많은 회계부서 인원들이 LIBOR 금리 중단과 관련된 회계 이슈의 중요도가 비교적 낮다고 인식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기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예외 규정' 또는 '실무적 간편법'이라는 용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규정이나 실무적 간편법은 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필요하다.



LIBOR 금리 산출 중단에 따른 회계기준서 개정사항

LIBOR 금리 산출 중단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며, 2단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039호, 제1107호, 제1104호, 제1116호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다. 동 개정 가운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이하 'K-IFRS 1109')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이하 'K-IFRS 1107')가 금융기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1단계>

구분	IAS 39	IFRS 9	IFRS 7	IFRS 4	IFRS 16
위험회피회계 중단 예외	○	○	○		

<2단계>

구분	IAS 39	IFRS 9	IFRS 7	IFRS 4	IFRS 16
금융상품 조건 변경		○		○	○
위험회피회계 중단 예외	○	○			
항목 집합 위험회피회계의 예외	○	○			
위험구성요소 지정시 별도식별 가능성 조건에 대한 간주 규정	○	○			
추가 공시 요구사항			○		

1단계 개정 사항

기업회계기준서의 1단계 개정은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다. '위험회피회계'는 기준서에서 설정한 특정한 '요구조건(requirements)'을 만족해야 적용할 수 있는 특수한 회계처리이다. LIBOR 금리 산출 중단으로 촉발된 이자율 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율에 대한 불확실성은 '위험회피회계' 적용을 위한 기준서 상 요구조건'의 충족 또는 그 충족 여부를 평가(assess)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1단계 개정사항은 요구 조건에 대한 '예외규정'을 추가하여 불확실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실무적인 어려움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동시에 기준서는 이러한 예외규정이 적용되었음을 정보이용자에게 주시시키기 위하여 예외규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단계 개정 사항

LIBOR 금리 산출 중단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기준서 1단계 개정의 내용이 이자율지표 개혁 전의 불확실성에 대한 개정이라면, 2단계 개정은 LIBOR 금리 등의 '기존 이자율'이 '대체 지표 이자율'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이는 크게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대한 사항과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LIBOR 금리 등을 기초로 체결되어 보유하고 있는 계약 및 향후 대체지표 금리로 체결될 계약에 실질적인 현금흐름의 변경과 이러한 계약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방법을 담고 있다.

실질적으로 각 금융기관들이 현재 시점에서 LIBOR 금리 산출 중단과 관련하여 대응하여야 하는 많은 회계 이슈들은 상기 2단계의 기준서 개정 내용에 따라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구분	기준서	기준서 문단
예외규정	K-IFRS 1109	<p>제6.8절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6.8.1~6.8.3) • 현금흐름위험회피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커야 한다는 요구사항(6.8.4) •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누계액의 재분류(6.8.5) •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 평가(6.8.6) •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 지정(6.8.7~6.8.8) • 적용 종료(6.8.9~6.8.12) <p>제7.1절 시행일(7.1.8)</p> <p>제7.2절 경과규정(7.2.26 (4))</p>
공시	K-IFRS 1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24H) • 시행일과 경과 규정(44DE-44DF)

구분	기준서	기준서 문단
예외규정	K-IFRS 1109	<p>제5.4절 상각후원가 측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5.4.5~5.4.9) <p>제6.8절 특정 위험회피회계 요구사항 적용에 대한 한시적 예외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의 종료(6.8.13) <p>제6.9절 이자율지표 개혁에 따라 추가된 한시적 예외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및 적용대상(6.9.1~6.9.6) •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의 회계처리(6.9.7~6.9.8) • 항목 집합(6.9.9~6.9.10) • 위험 구성요소의 지정(6.9.11~6.9.13) <p>제7.1절 시행일(7.1.10)</p> <p>제7.2절 경과규정(7.2.43~7.2.46)</p>
공시	K-IFRS 11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율지표 개혁에 관한 추가 공시(24I~24J) • 시행일과 경과 규정(44GG-44HH)

현금흐름 산정 기준의 변경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

개정된 기준서는 이자율 지표 개혁에 따른 계약 변경 회계처리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될 시 이에 대한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하고 있다. 계약변경에는 이자율 계산 방법의 변경과 대체조항(Fall-Back)의 추가도 포함된다. 개정 전 기준서를 따른다면 금융상품의 조건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조건 변경의 수준에 따라 그 효과를 측정하여 장부금액을 변경하고, 해당 금액을 손익(P/L)로 인식하거나 해당 금융상품을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나 개정된 기준서 상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경우 '계약상 현금흐름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시점'에는 장부금액은 변동시키지 않으며, 유효이자율을 새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LIBOR 금리 산출 중단으로 인해 기존에 LIBOR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의 만기가 LIBOR 금리 산출 중단 시점 이후인 경우 필연적으로 현금흐름의 산정 기준이 변경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각 금융기관은 보유 계약에 대한 검토 후, 이자율 지표 개혁으로 인해 동 계약의 현금흐름이 변경되는 것이 확인되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용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검토 결과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은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의 회계처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가능 여부에 따라 회계처리 및 관련 손익 등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기준서의 변경을 고려하였을 때, 계약상의 변경에 대해 '실무적 간편법' 적용을 위해서는 '이자율 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의 정의 및, 계약 변경항목에서 '이자율 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과 '이외의 변경(추가변경사항)'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제적 동등성에 대한 평가(assessment)를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계약 변경의 유형별로 '대체 전 이자율 지표와 대체 후 이자율 지표가 실질적으로 비슷한지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기준서 상에서 '동등성'이라고 표현된 개념과 이를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다. 실무적으로 상기 동등성 평가(assessment)의 핵심은 계약변경 시 추가되는 스프레드가 '기존 이자율 지표와 대체 지표 이자율 간의 기준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고정 스프레드'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 변경에 추가되는 스프레드에 대한 기준 설정 단계에서부터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회계부서는 계약변경을 주도하고 있는 담당부서와 계약변경 초기 단계부터 논의하여 의도치 않은 손익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① ISDA 프로토콜에 따라 일괄적으로 전환되는 상품이나, ARRC 등 기관들의 권고안에 따라 전환되는 상품들과 같이 국내외 모두에서 통용되는 규정이나 권고에 따른 변경'과 이 외 ② 개별 계약 당사자간 협의로 변경 사항이 결정되는 유형의 상품들'에 대하여 각기 상이한 평가 방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후자의 경우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계약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 비교적 구체적인 평가 결과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적 간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기존 K-IFRS 1109의 금융상품 조건변경 시의 회계처리를 따르게 된다. 계약 변경 사항에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변경'과 '이외의 변경(추가변경사항)'이 함께 포함된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추가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금융상품이 제거되어야 하는지 판단한다. 판단 결과 금융상품 제거요건에 만족할 경우 금융상품을 제거한다.

 '이자율지표 개혁에서 요구된 계약변경'에 대해서만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다.

 '추가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K-IFRS 1109의 금융상품조건변경 시의 회계처리를 따른다.

위험회피회계와 관련된 한시적 예외

LIBOR 금리 산출 중단에서 시작된 이자율 지표 개혁은 위험회피회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기준서 개정 사항은 1단계 및 2단계 개정 모두 포함되었다. 1단계 개정은 '이자율 지표 개혁으로 인한 변경 이전'을, 2단계 개정은 '이자율지표 개혁으로 인한 변경 시점'에 대한 사항을 각각 다루고 있다.

각 단계별 개정 기준의 적용 시점은 개별 위험회피 관계별로, 그리고 그 관계 내에서도 위험회피 수단과 위험회피 대상별로 구분되어 적용된다. 즉, 한 금융기관 내에 다수의 위험회피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위험회피 관계는 1단계 개정기준의 적용대상이지만, 나머지는 2단계 개정기준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하나의 위험회피 관계 내에서도 위험회피 대상은 1단계 개정기준의 적용 대상이나 위험회피 수단은 2단계 개정기준의 적용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는 특히 회계적 관점에서 충분한 고민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개정 기준서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허용하여 이자율 지표 개혁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손익 변동 등의 가능성을 완화해 주고 있지만,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 역시 존재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개정 회계 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고려 없이 위험회피 관계에 포함된 금융상품의 계약이 변경될 경우, 예상치 못한 사항들이 위험회피효과 평가에 반영되어 비효과로 나타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기존 위험회피 회계로 목적했던 바와 관계없이 예상치 못한 손익 등으로 반영될 수 있다.

1단계 개정에 포함된 예외규정 중 위험회피 관계에 핵심적인 조항은 아래와 같다.

-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 평가
- 항목의 구성요소를 위험회피 대상항목으로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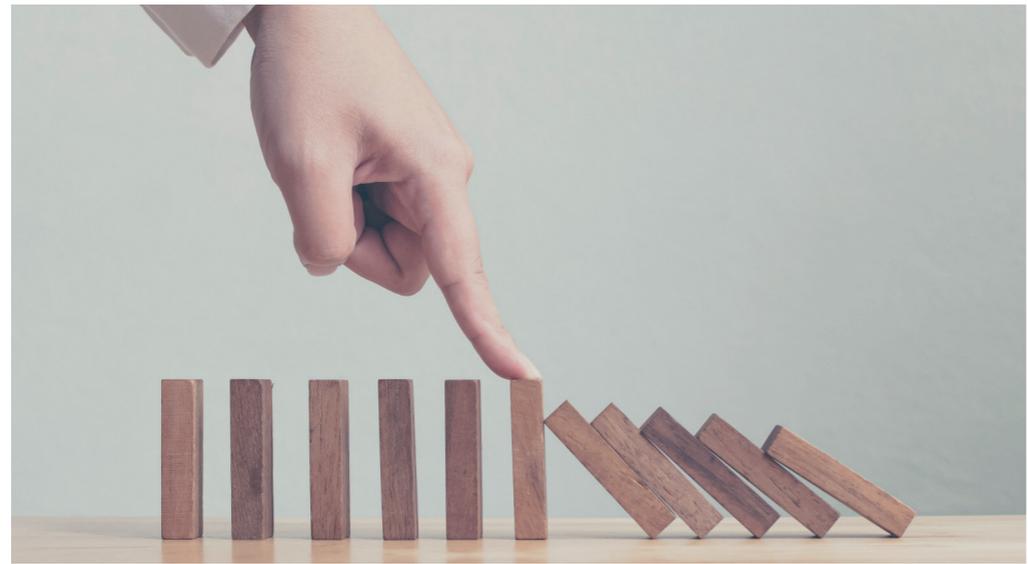
상기 조항 중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위험회피 수단 사이의 경제적 관계 평가'의 경우 기준서 상 위험회피 효과에 대한 요구사항 중 경제적 관계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실무에서는 흔히 '위험회피 효과평가'로 불리고 있다. IFRS 9 기준서는 경제적 관계에 대한 평가(이하 '위험회피효과평가')에 대해 전진적인 평가만을 요구하고 있다. '전진적 평가란 미래 위험회피 기간 동안 해당 위험회피 수단과 대상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관계가 있는 지(위험회피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지정된 위험회피 기간 내에 이자율 지표 개혁으로 인한 변동이 예상된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항들이 위험회피 효과평가에 반영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상당한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개정 기준서는 아래와 같은 예외규정을 통해 이를 완화시켜 주고 있다.

☑ 위험회피 효과평가 시에 위험회피 대상 현금흐름과(또는) 회피대상 위험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 지표(계약상 특정될 수도 있고 계약상 특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또는 위험회피 수단의 현금흐름이 기초로 하는 이자율 지표는 이자율 지표 개혁의 결과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상기의 예외규정은 기존에 LIBOR 금리를 기준으로 위험회피 효과평가를 하던 사항을 1단계 개정기준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LIBOR 금리 기준의 위험회피 효과평가를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상기의 1단계 예외규정은 아래 상황에서 그 적용이 중단된다.

☑ 아래의 1과 2의 상황에서 위험회피 효과평가에 대한 예외 조항의 적용을 각각 전진적으로 중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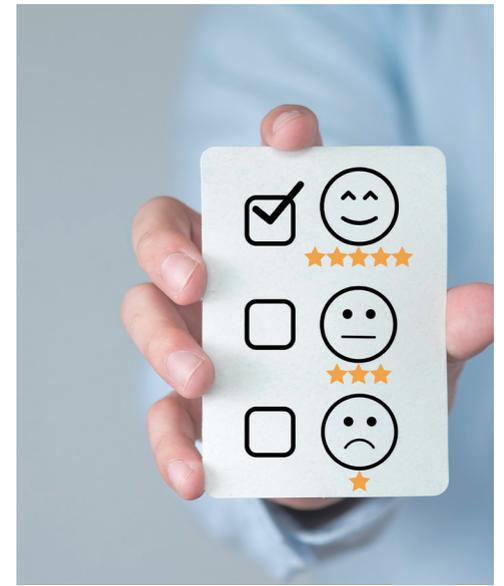
- 1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경우,**
이자율 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 대상 항목의 회피대상 위험이나 이자율 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 2 위험회피수단의 경우,**
이자율 지표 개혁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위험회피 수단의 이자율 지표에 기초한 현금흐름의 시기와 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때



여기서 위험회피 수단과 위험회피 대상의 '위험회피 효과평가에 대한 예외 조항'의 적용 중단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험회피 수단은 RFR로 평가하고 위험회피 대상은 LIBOR 금리로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각각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으며, 초록색 박스로 표시된 경우가 앞서 설명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구분	기준금리 일치	기준금리변경 시점차이 발생	기준금리 일치
위험회피 수단	LIBOR	RFR	RFR
위험회피 대상	LIBOR	LIBOR	RFR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회피수단 및 위험회피대상 모두 Phase1 예외사항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회피수단 Phase 1 예외사항 적용종료(RFR적용) 위험회피대상 Phase1 예외사항 적용(LIBOR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회피수단 및 위험회피대상 모두 예외사항 적용 종료(RFR 적용)
	특이사항 없음	위험회피 비효과 발생 가능	특이사항 없음

또 하나의 중요 예외규정은 위험회피 대상항목 지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자율 지표 개혁으로 인하여 LIBOR 금리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시장에서 그 유동성이 감소할 경우 LIBOR 금리로 인한 변동은 별도의 식별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식별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이에 1단계 개정 기준서에서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이자율 위험의 지표 요소에 대한 위험회피의 경우 위험회피 관계의 개시 시점에만 문단 '위험 구성요소는 별도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함'을 적용한다.

상기의 예외규정 덕분에 추가적으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식별가능성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부담은 경감되었다.

1단계의 예외규정이 중단되는 시점에서는 2단계의 예외규정을 즉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2단계 개정 기준에서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 ☑️ 지정일 현재 별도로 식별할 수 없으나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된 대체 지표 이자율은,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그 날에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4개월의 기간은 각 대체 지표 이자율에 별도로(즉 24개월의 기간은 각각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기산한다(문단 6.9.11).
- ☑️ 후속적으로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로 처음 지정한 날부터 24개월 이내에 대체 지표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된다면, 그 대체 지표 이자율에 문단 6.9.11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체 지표 이자율을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 구성요소로 지정한 모든 위험회피 관계에 대한 위험회피 회계를 그 재평가부터 전진적으로 중단한다(문단 6.9.12).

따라서 '1단계 개정기준' 적용종료 시점에 향후 24개월 이내에 위험회피 대상항목으로 지정할 이자율을 별도로 식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어야 위험회피회계의 지속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물론 상기의 합리적 예상은 '근거를 포함하여' 문서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된 평가는 기준 이자율 별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상기의 예외규정은 '식별가능성'에 대한 예외 조항만 포함되

어 있으며, '신뢰성 있는 측정'은 예외 조항이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자율지표 개혁은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표이자율과 대체되는 이자율의 형태도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국의 이자율지표개혁의 방향은 크게 아래와 같다.

국가	기존 이자율	대체이자율	
		현물상품	파생상품
미국	USD LIBOR		SOFR
영국	GBP LIBOR		SONIA
유로	EUR LIBOR/ EURIBOR	EURIBOR+	ESTR
일본	JPY LIBOR/TIBOR	TIBOR+	TONAR

상기의 예시 중 유로지역과 일본의 경우 현물상품과 파생상품에 적용하는 대체이자율이 상이하다. 이는 위험회피회계 상 비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위험회피 대상은 주로 채권, 대출채권, 발행사채 등 현물상품이다.

현물 상품에 대하여 공정가치 위험회피회계 적용 시 '계약상 특정되지 않은 위험요소'를 위험회피 대상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하는 상품의 발행 시장 등에서 노출된 위험요소를 지정해야 한다. 즉, 상기의 표와 같은 각

국가별 대체 지표 금리를 가정할 경우, 위험회피 대상 항목은 EURIBOR+(유럽), TIBOR+(일본)으로 지정될 것이지만,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은 ESTR(유럽),

TONAR(일본)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위험회피 대상항목과 파생상품의 기준지표 이자율의 차이로 인한 비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구분	기준금리 일치	기준금리 차이발생
위험회피 수단	LIBOR	RFR
위험회피 대상	LIBOR	IBOR+
고려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회피수단 및 위험회피대상 모두 Phase1예외사항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회피수단 Phase 1 예외사항 적용종료(RFR적용) 위험회피대상 Phase1 예외사항 적용(IBOR+적용)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이 기준금리가 다를 경우

➡️ 특이사항 없음

➡️ 위험회피 비효과 발생 가능

한편, 위험회피 수단으로 주로 이용되는 파생상품의 경우 일반금융상품과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이자율 지표의 변경이 반영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결론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종결(close-out) 및 동일한 조건으로 대체(즉, 시장 외 조건)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동일한 거래상대방과 새로운 두 가지 파생상품을 체결할 것이다. 두 파생상품 중 하나는 최초 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최초 파생상품과 상쇄되는 새로운 파생상품(이 두 계약은 모두 대체될 지표 이자율에 근거함)이고, 다른 하나는 최초 파생상품과 조건이 동일하여 동 파생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최초 파생상품의 해당일의 공정가치이며(즉, 새로운 파생상품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상태(off-market)임)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반한 파생상품일 것이다.

➡️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해당하여 기존 위험회피 관계 적용 가능

☑️ 종결(close-out) 및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대체(예, 시장 조건)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기존 이자율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현금결제로 종결하고, 다른 조건이지만 시장 조건에 맞는 대체 지표 이자율에 기반하는 파생상품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새로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가 최초 인식시점에 영(0)이 되도록 할 것이다.

➡️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위험회피관계 적용 불가

☑ 새로운 베이스스 스왑의 추가

이 접근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최초 이자율 지표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기존 지표 이자율을 새로운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는 베이스스 스왑을 체결할 것이다. 이들 파생상품의 결합은 최초 파생상품 계약 조건 상 지표 이자율을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도록 변경하는 것과 동일하다.

- ▶▶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해당하여 기존 위험회피 관계 적용 가능
(단, 반드시 베이스스 스왑이 최초 파생상품과 결합되거나 연계되어야 함.
포괄적인 익스포저를 대상으로한 베이스스 스왑은 요구조건에 부합하지 않음)

☑ 새로운 거래 상대방과의 계약 갱신(Novation)

이 접근법을 적용한 기업은 최초 지표이자율에 기초한 파생상품을 새로운 거래 상대방과 계약 갱신하고, 후속적으로 지표이자율을 대체 지표 이자율로 대체하기 위해 갱신된 파생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할 것이다. IASB는 파생상품의 계약 갱신이 최초 파생상품을 제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따라서 IFRS 9의 문단 6.5.6에 따라 위험회피회계가 중단될 것이라고 보았다.

- ▶▶ 개혁에서 요구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위험회피 관계 적용 불가능



LIBOR 금리 산출 중단이 금융기관에 미치게 될 영향은 다양하다. 금융기관은 단순히 규제 기관의 요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체적인 필요에 의해서도 각 영향도를 적절히 식별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금융기관에서는 LIBOR 금리를 근거로 하여 직접적인 거래를 수행하는 부서들이 각기 개별적으로 마주한 이슈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LIBOR 금리 고시 중단 및
신규 지표 금리 도입은 여신, 자금,
파생, 리스크 등 유관 부서 전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주제이다.**

특히, 상당수의 금융기관에서 중요도를 다소 낮게 판단하는 회계적인 문제점들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 회계적 관점에서 영향 분석이 수행되지 않은 상태로 계약서 내용이 변경될 경우 예상치 못한 손

익 변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고에서는 한정된 공간으로 인하여 모두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LIBOR 금리 산출 중단으로 발생하는 이자율 지표 개혁의 효과는 재무제표의 주석에도 적절히 공시되어야 한다. 한편 공시 요구사항이 유관 회계 정책부터 위험 관리 현황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준서 내용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슈는 아니지만, 이자율 개혁에 따라 고민이 필요한 부수적인 회계적 문제들이 존재한다. 유효이자율 산출이나 미수/미지급이자 계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또한 개별 금융기관의 회계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 사결정을 내리고, 시스템에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이슈들에 대해서도 각 금융기관의 회계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의사 결정하여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LIBOR 산출 중단에 대한 완벽한 대응은 회계 영역에 있어서의 대응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03

보험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고찰

허호영 파트너, 한유기 파트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보험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변경 사항

최근 보험사를 중심으로 한 제도의 변경은 어마어마하다. IFRS 17 도입으로 인해 보험회계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실상을 반영하여 건전성 감독제도인 K-ICS(Korea Insurance Capital Standard)도 새롭게 도입된다. 보험사는 이러한 IFRS 17 및 K-ICS를 2023년부터 적용해야 하며, IFRS 17의 경우 비교표시를 위해 2022년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그 동안 원가¹로 평가되었던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패러다임의 변경으로 인한 것으로 보험사 대부분의 영역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다.

이러한 회계 기준의 변경과는 별개로 2019년부터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에서 감사로의 인증 수준이 상향되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상장법인은 외감법에 따라 2005 회계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 '검토'를 받아왔으며, 신(新)외감법 시행으로 2019 회계연도부터 인증절차가 강화되어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²으로 '감사'를 받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더군다나, 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회사의 경우 외감법 시행령 제 9조 2항 6호에 따라 2023년부터는 연결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보험사가 직면하고 있는 회계와 관련한 중대한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 2019년 주권상장법인인 보험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인증 수준이 "감사"로 상향
- ☑ 2023년 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인 보험사는 연결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 ☑ 2023년부터는 IFRS 17과 K-ICS 시행. IFRS 17은 비교표시를 위해 2022년부터 병행 결산 필요

이러한 제도의 변경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A보험사는 비상장법인이나 A보험사의 지배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이라고 가정한다. 2021년 현재 A보험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수준이 "감사"가 아닌 "검토" 수준으로 보고서가 발행되고 있을 것이며, 전 보험사가 2023년부터 IFRS17을 적용해야 하므로 A보험사는 힘들게 IFRS 17 및 K-ICS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IFRS 17 등 보험부채의 시가 평가를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으며, 그 피로도는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갑자기 2021년에 2023년 이후로 연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연결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연기가 되지 않고 2022년부터 적용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 경우, A보험사는 2022년에는 주권상장법인인 모회사 때문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 수준으로 받아야 하므로, 힘들지만 2021년에는 IFRS 17이 아닌 현재 적용하고 있는

IFRS 4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IFRS 4 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는 2022년 한해만 쓸 수 있고, 2022년에는 2023년을 위해 IFRS 17를 적용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행히 2021년 6월에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COVID-19로 악화된 경영 상황과 급변하는 시장 환경 대응하기 위하여 긴밀한 기업 소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의 하나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유예기간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 1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될 경우 보험사의 부담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IFRS 17이라는 거대한 관문을 앞둔 상태에서 비효율적인 자원이 낭비되지 않아 참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IFRS 17 적용도 어려운데 IFRS 17을 적용하는 바로 그 시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처음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 한해 충격의 강도는 훨씬 더 클 것이다.

1 보험회계에서 말하는 원가법은 회계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원가법과는 개념이 약간 다르다. 보험회계에서의 원가법은 현행(current)가정을 반영하지 않고, 최초 인식시(locked-in)가정을 유지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한편, 현행 기준인 IFRS 4에서는 이러한 원가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부채적정성평가(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요구하고 있다.

2 2조원 이상(19년), 2조원~5천억원(20년), 5천억원~1천억원(22년), 1천억원 미만(23년)

3 2022년부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단계적 시행 예정이었으나, 해외 종속회사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는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에 유예기간 부여(1년)를 검토하고 있다.

과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이러한 격변기에 보험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현황을 파악하고, 중요한 취약점⁴으로 공시한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년 9월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도자료에 따르면,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9년에는 인증절차 강화(검토→감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비율은 2.5%로 전기

내부회계 검토 결과 비적정의견 비율(1.9%) 대비 소폭만 증가되었다고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2019년에는 내부회계 감사 대상을 2조원 이상 대형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내부회계 감사를 준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4사는 손상인식, 리스회계, 총당부채 측정, 금융상품 회계처리 등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하였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중요한 취약점

- 손상**
 - 현금창출단위의 자산 손상 관련
 - 유형자산 및 사용권 자산 손상 관련
- 리스**
 - 리스 회계처리 관련
- 기타**
 - 종업원(단체)과 체결한 약정사항 인식 관련
 - 금융상품 회계처리의 정확성 검토 관련
 - 소송총당부채의 측정 관련
 - 항공기 정비비용(유형자산, 미지급비용) 인식 관련

4 중요한 취약점(MW : Material Weakness): 외부감사인은 중요한 취약점을 내부회계 감사의견에 포함하여 의견을 표명
 - 하나 또는 복수의 통제미비점의 결합으로 재무제표상 중요한 왜곡표시가 예방 또는 적시에 적발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경우
 - 중요한 취약점 발견 시 회사의 내부회계를 효과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음



이러한 내부회계 비적정의견과 관련한 중요한 취약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 번째 시사점은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9년의 중요한 취약점은 대부분 ‘최초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수정사항’과 ‘전기오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내부회계 모범규준에서는 ‘최초 재무제표에 미반영된 수정사항’과 ‘전기오류’를 중요한 취약점으로 예시하고 있어 수정사항과 전기오류 금액의 중요성이 매우 클 경우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견에 적정을 주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내부회계 감사제도 대상이 되는 회사는 반드시 수정사항과 전기오류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

두 번째 시사점은

자산 손상이나 총당부채의 측정과 같이 경영진의 추정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취약점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인식되는 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단을 하여야 하며, 다른 자료로부터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한다. 추정치와 관련된 가정은 과거 경험 및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타 요인에 근거하며, 실제 결과는 이러한 추정치들과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정의 영역은 외부감사인과 회사, 더 나아가 외부감사인 간에도 의견 차이가 많은 영역이며 수정사항 및 전기오류와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 번째 시사점은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시 오류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 이러한 오류가능성은 중요한 취약점과 직결된다는 점이다. 리스와 관련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가 2019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새로운 기준서에 따르면, 재무상태표에 계상되지 않았던 운용리스의 회계처리가 크게 변경되어 최초인식시점에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 측정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고,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부채의 이자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기준서의 적용은 기준서의 변경사항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변경사항은 인지하였으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제는 수정사항의 발생이 재무제표에 이러한 수정 사항을 반영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뿐 만 아니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히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정사항/전기오류의 관리가 정말 중요해 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은 내부회계 감사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해다 보니, 이를 적용한 회사도 그렇고 외부감사를 수행한 회계법인에게도 매우 불편한 한해였다. 그러다 보니 중요한 취약점을 선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비적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내부회계 모범규준에 명시되어 있는 명확한 부분에 집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분석은 내부회계 감사제도를 2004년에 도입한 미국 사례와 비교할 경우 좀 더 명확해 진다. 우리나라는 재무제표 작성 프로세스와 관련한 통제미비점만을 중요한 취약점으로 공시한 반면, 미국의 경우 내부통제환경 구축 미흡, 회계인력이나 경영진의 전문성 미비 등 내부통제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된 사유로 비적정의견을 받은 회사가 약 60%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는 결산 관련 통제 취약점 발견 시 이와 연관된 본질적 통제 요소(통제환경, 회계역량, 업무분장 등)의 취약점까지 치유되어야 한다는 Top-Down 평가방식을 적용한 것에 기인한다.

美 내부회계 비적정의견 사유 및 비중('18 회계연도 기준)

비적정의견 사유(중요한 취약점)	회사 수	비중
재무제표 작성·공시 관련 프로세스 통제 취약	180사	36.8%
내부통제 환경 구축 미흡	288사	58.8%
내부감사 미비	10사	2.0%
경영진의 전문성 등 취약	5사	1.0%
기타	7사	1.4%
합계	490사	100.0%

미국의 사례는 내부회계 감사제도의 장기적인 고려사항을 판단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내부회계 감사제도를 분석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수정사항/전기오류 발생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으로는 내부회계와 관련한 본질적인 통제요소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보험사의 2023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략

IFRS 17을 최초 도입하는 2023년은 정말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특히, 주기적 지정과 연계되어 2023년에 감사인을 변경해야 하는 보험사는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022년과 2023년 외부감사인이 동일하다면, 2022년도에 회계정책 검토 등 사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2023년에 외부감사인이 변경된다면 2022년에 이러한 사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시간에 쫓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IFRS 17이 도입되는 첫해는 혼돈(chaos)의 시기가 될 것이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단기적인 목표인 수정사항(IFRS 17 최초 적용이므로 전기오류의 가능성은 없음) 최소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러한 수정사항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감사 증적
(Audit Trail)

Audit Trail이라는 단어가 IFRS 17 기준서 상에서 언급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고에서는 “부채결산 산출 정보의 용이한 추적과 신속한 정보조회 구축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체계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Audit Trail”으로 칭하고자 한다. 이러한 Audit Trail은 관련 시스템 구축 여부를 떠나서 보험부채 계산의 복잡성을 고려할 경우에 반드시 필요한 프로세스⁵이다. IFRS 17에 따른 보험부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①계리적 가정, ②경제적 가정, ③부채 Movement⁶ ④ 보험 거래내역 및 사업비 정보 등 다양한 시스템에서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정보가 적절히 대응되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매우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 보험부채가 산출되므로, Audit Trail을 통해 점검하는 통제가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수정사항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측면에서 이러한 Audit Trail을 2023년 이전에 구축하고, 적절하게 프로세스 및 통제 설정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2023년 연도 중에 Audit Trail을 구축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특성상 감사 업무 범위에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존재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보고서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히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연도 중에 취약점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적절히 치유되고 충분한 기간동안 운영된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견에는 영향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에 의존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연도 중에 취약점이 존재한다면 기말 감사 시 감사 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존재한다.

5 Audit Trail은 IFRS 17의 결산 데이터/프로세스의 검증 및 재무결과/내부통제 검증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6 IFRS 17에 따른 보험부채의 재무정보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보험부채 구성요소(최적추정부채(BEL, Best Estimated Liability), 위험조정(RA, Risk Adjustment) 및 계약서비스마진(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별 기초 및 기말 측정과 기준 변동사항의 단계별 조정내역 파악이 필요하며, 재무제표 산출을 위해 이러한 변동내역을 집계하는 프로세스/시스템을 부채 Movement라 한다.

②
예정 vs
실제 현금흐름
분석을 통한
가정관리의
안정화

대부분의 보험사는 현재 IFRS 17 도입 용역을 마무리하고, 고도화 단계를 시작했거나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다. 변동수수료모형(VFA, Variable Fee Approach)의 구축, 재보험 및 퇴직연금과 관련된 시스템의 구축 등 일부 시스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IFRS 17에 따른 기본적인 재무정보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재무정보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모든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각 시점의 추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소급적 검토를 수행한다.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예를 들어 소급적 검토에 대해 설명해 보자. 전기말에 잔여 만기가 1년 미만인 100원의 대출채권에 대손충당금을 1원을 설정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당기에 대손이 10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적 검토를 통해 전기에 대손충당금 1원이 적절하지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대손충당금은 경영진의 추정의 영역이므로 향후 실제 발생한 금액과 정확히 일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그 차이금액이 유의적일 경우에는 전기의 대손충당금이 당시의 상황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소급적 검토는 IFRS 17의 보험부채에서는 좀 더 명확히 나타난다. IFRS 17의 구조상 전기말(또는 전분(반)기말) 보험부채를 측정하기 위해 추정된 예상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각 현금흐름의 속성에 따라 어떤 현금흐름의 예상 vs 실제 차이는 당기손익에 반영되기도 하고, 어떤 현금흐름의 예상 vs 실제 차이는 보험부채 내의 계약서비스마진(CSM, Contractual Service Margin)에서 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예상현금흐름과 실제현금흐름의 차이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될 것이다. 이러한 차이금액이 일관되거나 일정 패턴을 보일 경우 예상현금흐름 추정에 편의(bias)가 존재한다는 방증이 될 수 있으며, 전기오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전기에 추정된 예상현금흐름에 오류가 있을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히 설계되고 운영되지 않았다는 중요한 취약점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로 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은 적정 의견에서 변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사는 회사의 가정(계리적 가정과 경제적 가정 모두)이 적정인지 끊임없이 검증하여야 하며, IFRS 17이 도입되는 2023년 이전에 어느 정도 가정의 완전성과 적정성은 담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IFRS17 도입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많은 보험사의 회계 담당자들이 농담삼아 2023년에는 더 이상 회계 부서에 남아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회계 담당자가 IFRS17 도입 전과 비교하여 쉽게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아마도 그만큼 IFRS 17이 중요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보험사의 입장에서 2023년은 시쳇말로 잘 넘어가야 하는 해다. 2023년은 어떻게 하면 유의적인 수정사항 없이 IFRS 17을 잘 도입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게 할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한 시기다.

보험사의 장기적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략

보험사의 IFRS 17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2023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략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확하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영역이고, 경영진의 추정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입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정사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몇 년에 걸쳐 구축한 시스템에 체계적 오류는 없는지 검증하여야 하고, 예상현금흐름 산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정이 적절한지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사가 고민을 하다 보면, 내부회계와 관련된 본질적인 통제요소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 1) 경영진의 검토 통제 (MRC, Management review controls)
- 2) 통제에 사용되는 정보 (IUC, Information Used in a Control)

IFRS 17의 보험부채는 시가(정확히는 '이행가치')로 측정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본질적으로 추정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이 개입된다. 또한, IFRS 17의 보험부채는 보험부채 단일요소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부채 구성요소(BEL, RA 및 CSM)별로 측정을 하고 그 변동내역(movement)을 추적하여 관리하다 보니 상당히 많은 가정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추정의 불확실성에 연관이 되는 통제활동은 대부분 경영진의 검토 통제(MRC, Management review controls)와 관련이 있으며, 복잡 다단한 기초 자료를 기반으로 측정된다면 필수적으로 통제에 사용되는 정보(IUC, Information Used in a Control)에 대한 추가적인 통제가 필요하다.



1) 경영진의 검토 통제(MRC, Management review controls)

경영진의 검토 통제(MRC)란 경영진 등 상위권자에 의해 수행되는 리부 속성을 가진 통제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장 회사도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목으로, 주의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① 다른 통제활동 수행 시 보다 더 많은 판단, 지식, 그리고 경험을 요구
- ② 하나 이상의 위험과 관련
- ③ 대부분 더 많은 복잡성과 수행자의 주관적 개입

예시

- 보험부채 구성요소별 측정시 사용된 회사의 계리적 가정 및 경제적 가정의 적정성에 대한 상위권자의 검토
- 결산조정사항 등이 모두 반영된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상위권자의 검토

➤ 따라서, 효과적인 MRC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함

설계시 고려해야 할 요소

- 검토(통제) 수행자의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가?
- 검토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를 명확히 식별하고 있는가?
- 구체적인 검토 활동(Check Point)에 대한 기술이 있는가?
- 검토 결과 및 검토 중 발견된 이슈에 대한 follow-up 과정을 보여주는 증거 (i.e checklist, 담당자와의 communication 사항 등)이 있는가?

- MRC의 적절한 설계 및 설계에 따른 운영
- 운영한 증거를 감사인에게 제시

시사점

- MRC는 그 중요도가 높아 수행 및 평가 시 많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하며, 따라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식별하고 엄격한 설계기준에 의거 설계하고 운영되어야 함
- MRC의 통제위험은 그 복잡성과 주관성에 따라 대부분 Higher Risk로 판단되는 바 감사인의 많은 질문과 comment가 예상되는 영역임

상기와 같이 경영진의 검토 통제는 매우 복잡하고 수행자의 주관적 개입이 많은 통제로서 많은 노력과 주의가 필요한 통제이다. 특히, 경영진의 검토 통제는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검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①구체적인 검토 활동이 어떤 것이며, ②이러한 검토 활동에 사용되는 정보를 명확히 식별되었는지 ③검토 결과 발견된 이슈에 대해 후속조치를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 충분히 통제가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계리적 가정의 적정성에 대해 경영진의 검토 통제를 식별했을 경우, 형식적인 해당 부서장 또는 가정관리위원회의 승인(관련 서류의 결재 등)만으로는 통제가 적절히 설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실질적으로 관련 정보의 결재를 진행하기 위해 어떠한 검토 활동을 했는지 문서화가 필요하며, 이 때 사용된 정보에 대해 추가적인 통제활동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제는 뒤에서 설명하는 통제에 사용되는 정보(IUC)에서 추가 언급하기로 한다.

IFRS 17에 따른 보험부채는 상당히 많은 판단을 기초로 산출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보험부채와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에는 경영진의 검토 통제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영진의 검토 통제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중요한 취약점이 발생하고 재무정보가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2) 통제에 사용되는 정보(IUC, Information Used in a Control)

통제에 사용되는 정보는 회사가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 목적으로는 재무 보고를 위한 통제 상에 활용되는 데이터를 지칭하는 것으로 회사는 정보시스템 상의 파라미터, 리포트 로직, 원천 데이터의 검증 등을 통해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테스트하여야 한다.



IUC 도입시 고려사항

- 재무보고 목적의 개별 통제들에 사용되는 정보(IUC)의 식별
- IUC의 정확성 ·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 절차 수립
- 식별된 IUC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 및 문서화하고 감사인에게 제출

IUC를 식별하고 파라미터, 로직, 원천 데이터의 검증을 통해 IUC가 적절히 설계되어 있는지 검증

통제에 사용되는 정보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식별의 수준에 따라 통제활동의 개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통제에 사용되는 정보와 관련된 통제활동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적절히 운영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통제에 사용되는 정보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 또 그 정보 산출을 위해 사용되는 정보로 끝까지 따라갈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율성은 크게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통제에 사용되는 정보를 적절하게 식별하기 위해서는 우측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통제에 사용되는 정보의 적절한 식별 방안]

- 관련 통제의 D&I 또는 운영 효과성을 평가할 때는 항상 통제에서 사용되는 정보 고려
- 통제를 이해 하여 IUC를 입수
- IUC의 어떤 측면이 관련이 있는지 결정하고 어떻게 관련 정보가 생성 되는지 이해 필수
- IUC가 충분히 신뢰 할 수 있는지 항상 평가
- 통제의 운영 효과성을 테스트할 때에는 IUC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근거를 입수



보험부채를 산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정보는 엄청나게 많다. 이러한 정보 중 통제에 사용되는 정보로 어떤 정보를 식별하느냐에 따라 IFRS 17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결정될 수 있다.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통제가 있을 경우 가정 산출을 위해서는 산출 로직 뿐만 아니라 과거 수많은 정보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원천 데이터를 통제에 사용되는 정보로 식별할 경우 그 통제에 대해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 있다.

내부회계와 관련한 본질적인 통제요소 중 보험부채와 관련한 주요 통제요소로 경영진의 검토 통제(MRC, Management review controls)와 통제에 사용되는 정보(IUC, Information Used in a Control)를 살펴보았다. IFRS 17 보험부채 산출에 대하여 각 보험사의 회계 담당자와 논의를 하다 보면 상당히 계리적인 요소들이 많고,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요소들이 많다는 답변들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방안까지 구상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며, MRC, IUC 영역과 같이 주관적인 판단이 크게 개입하는 요소들로 인해 어려움은 가중되기도 한다.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해 통제활동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 마다 양 극단의 옛말이 떠오르곤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여 중요한 취약점이 없어야 하고, 재무회계 차원에서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렇다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울 수는 없다. 중요성의 관점에서 핵심 통제의 선택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다. IFRS 17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앞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난관을 마주친 보험사는 어떤 판단이 최적인지 진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04

보험업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진화

석혜정 파트너
딜로이트 컨설팅



"AT Home" 비대면 경제(Contactless Economy)도래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가장 뚜렷한 변화는 비대면 경제(Contactless Economy) 규모의 증대이며, 이러한 추세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 고객 및 기업의 적극적 수용과 대응의 영향을 받아 앞으로도 계속하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딜로이트는 아시아퍼시픽 지역 내 "At Home" 소비(집 안에서 하는 온라인 쇼핑과 원격의료를 통한 의사 진료 포함)가 2025년 연 3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그림 1).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COVID-19 으로 인한 비대면 시장의 성장률 증가이다. COVID-19 발생으로 인해서, 2025년 비대면 시장 규모는 COVID-19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20%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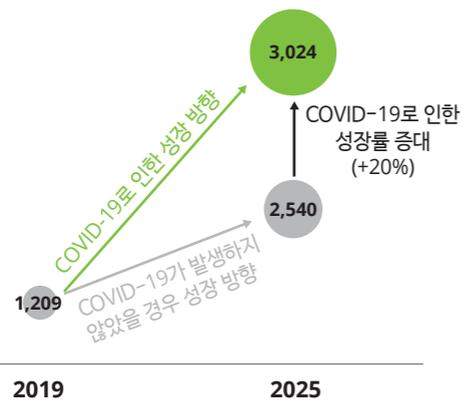
딜로이트는 2025년 "At Home" 소비 증대가 모든 항목에서 동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각 항목별 "At Home" 소비 증대 효과는 전체 가치사슬의 단계별 디지털 활용 수준과 디지털에 기반한 미래의 혁신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그림 1).

"At Home" 소비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의 2025년 예상 규모와 성장률

- ☑ COVID-19 이전부터 소비의 주요 방식으로 자리 잡은 이커머스(e-commerce)와 엠커머스(m-commerce)는 비대면 경제 소비에서 가장 큰 규모로서, 전체 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 ☑ "At Home" 소비 항목 중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장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금융서비스와 건강·의료 관련 소비이다.

그림 1
2019년~2025년 아시아퍼시픽 지역 "At-Home" 소비 전망¹

(단위: 십 억 달러,%)



At-Home 소비 상세	2025년 소비 규모 (합계: 3,024)	2020년~2025년 연평균 성장률(CAGR)
소비재	2,316	17%
여가오락	299	15%
교육	192	13%
건강	101	23%
식음료	96	10%
금융서비스	20	52%

1 Monitor Deloitte Analysis, Euromonitor, EIU, Investopedia, Kenneth Research, Research Dive, Statista, Research and Markets, Future Markets Insights, Grand View Research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성장과 보험사 대응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양상에서 건강 및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의 건강·의료와 웰빙을 모두 포괄하는 헬스케어는 이제 특정 업권의 화두가 아니라, 개인 삶과 관련된 모든 업권의 화두로 자리잡았다. 또한, 비대면 경제의 발전에 힘입어 COVID-19 감염병 예방과 팬데믹 이후 새로운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 대안으로서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는 디지털 기반 언택트 서비스와 모바일 플랫폼 활용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에, COVID-19가 발발한 2020년 이후로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이전 대비 더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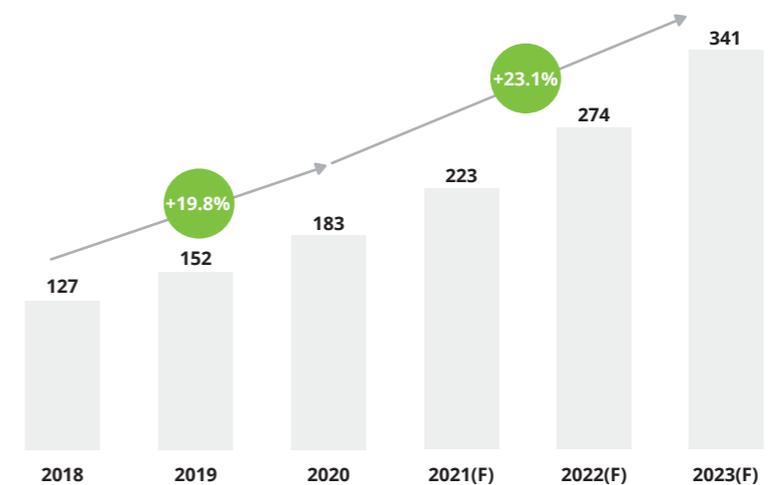
금융업의 하나인 보험업은 개인별 생애 단계(life stage)와 생활 양식(life style)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분야이다. 고객의 일상에서 건강과 웰

빙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보험업계는 최근 업의 본질을 기존의 '사후적 보호(protecting)'에서 '선제적, 적극적 예방(preventing)'으로 재정의하고, 헬스케어 사업으로의 확장을 도모하여 고객의 일상에 적극 개입하여 개인의 생활 양식 변화에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견인해가고자 한다.

보험사는 시장 규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의 디지털 활용 행동방식에 따라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모델의 확장과 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장 단순한 형태는 고객의 건강 관리 방식에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이를 통해 고객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가능하기도 하다. 현 수준에서 가장 발전된 모델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통합 E2E (End-to-End) 플랫폼 구현이다.

그림 2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규모 및 성장성²

(단위: 십 억 달러,%)



2 정보통신산업진흥원, Technavio

본 고에서는 글로벌 보험사들이 기용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글로벌 보험사가 기용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는 각국의 상이한 규제와 영향을 받으며, 이를 준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1) 건강관리 보조, 2) 건강 모니터링·자가진단, 3)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제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건강관리 보조

고객의 전반적 건강 증진을 목표로 웨어러블 기기 혹은 커넥티드 기기를 활용한다. 개인 별 걸음 수와 운동량 등 고객 행동정보 중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이리지를 추적하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 건강 모니터링 · 자가진단 · 예방

고객 행동 정보 외에 혈당량, 혈압, 심박수, 심전도 등 생체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위기상황 예측·예방 및 만성질환 악화 예방, 건강 위험 감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추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적정 위험률을 산출함으로써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의 보험 상품을 선제적으로 제공한다. 이스라엘 에센스(Essence)의 고령 고객 대상 시니어 케어(Senior Care), 미국 카디오그램(CardioGram)의 질병 위험 예측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3) 통합 헬스케어 플랫폼 제공

고객의 모든 행동, 생체, 의료 정보를 추적하고 관리함으로써 고객이 마주한 의료 및 건강, 웰빙과 관련된 현 상태와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한다.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원격 진료 서비스와 실시간 모니터링에 기반하여 증상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의료진 연결, 처방약 배달 등 다양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중국 평안보험(Ping-An)의 헬스 서비스 플랫폼, 영국계 보험사 프루덴셜(Prudential)이 동남아 시장에서 출시한 헬스케어 플랫폼 펄스(Pulse)를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건강관리 보조 서비스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디스커버리(Discovery)의 바이탈리티(Vitality)와 미국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 Healthcare)의 모션(Motion)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그림 3).

바이탈리티(Vitality)는 통합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보험사가 제공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시초로 평가된다. 바이탈리티는 에이아이에이(AIA), 스미토모생명보험(Su-

mitomo Life) 등 미국, 중국, 영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전세계 다양한 보험사들과의 제휴를 통해 2018년에 이미 8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바이탈리티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는 예방 서비스(Get Healthy)와 일종의 동기 부여를 위한 건강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Get Rewarded)로 구분할 수 있다.







예방 서비스(Get Healthy)

고객의 건강 측정 및 건강 검진, 건강 행동 등에 따라서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한다. 축적한 포인트 수준에 따라 고객의 회원 등급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건강 식품 또는 제품 구입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건강 증진 활동에 대한 보상(Get Rewarded)

고객이 축적한 포인트에 따라 즉각적인 혜택(예: 무료 건강음료 제공, 비행기/숙박 할인 등)을 차등적으로 제공한다.

미국 유나이티드헬스케어(UHC)의 모션(Motion)

웨어러블 기기로, 가입자의 걸음 수를 측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면 연간 11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목표 달성의 과정 또한 중시하여 움직임의 빈도, 강도, 지속성에 대해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그림 3 디스커버리(Discovery), 유나이티드 헬스케어(UnitedHealthcare) 건강관리 보조 서비스³

	디스커버리 바이탈리티 남아공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모션 미국
개요	통합 건강관리 플랫폼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보상 제공	웨어러블 서비스 제공 모바일 앱과 연동해서 걸음수 측정
보험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 관련 활동에 참여할 시 포인트가 지급되며, 축적 포인트에 따라 등급 적용 등급별 보험료 할인을 적용 및 다양한 혜택제공 (항공권/숙박권 할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걸음 빈도, 강도 및 지속성 (FIT: Frequency, Intensity, Tenacity)에 따른 보험료 환급 일일 목표 달성 시 연 최대 약 150만원 보험료 환급

3 Vitality Website, UnitedHealthcare Website, News Clippings

에센스(Essence) 낙상 예방 서비스

이스라엘에서 설립된 에센스(Essence)는 통신·보안·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를 대상으로 IoT 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에센스는 고령층의 주요 위험 요소인 낙상을 IoT와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토대로 예측하고, 방지하는 서비스인 케어앳홈™(Care@Home™)을 제공하여 고령 고객의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한다(그림 4).



☑ 낙상 대응 및 가정 돌봄 모니터링

집안에서 발생한 고령 고객의 낙상 사고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자동으로 감지한다. 위급상황에 직면한 고령 고객의 목소리를 인식해 자동으로 응급 연락을 취하는 음성인식 감지기가 상황실과 24시간 연계되어 있는 가정 돌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림 4
에센스(Essence) 낙상 예방 서비스⁴



낙상 대응

- ☑ 감지 센서 및 웨어러블을 활용하여 낙상 시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추가 피해 방지: 보호자에게 응급 연락을 하거나 응급 요원과 커뮤니케이션

낙상 예측

- ☑ 걸음 속도가 초당 5.1cm 감소 시 3주 내 낙상 사고 발생률이 86%로 상승하고, 보폭이 7.5%감소 시 낙상 확률 51%로 상승하는 연구 결과
- ☑ 이를 토대로 IoT 및 웨어러블로 걸음걸이를 분석하여 낙상 예측 가능

4 CES2019, News Clippings
5 Ping-An Annual Report, Goldman Sachs Report, Deloitte Analysis
6 관련 수치는 '17년 기준으로 합산
7 Monthly Active User

평안보험(Ping-An) One-Stop 헬스 서비스 플랫폼

중국 평안보험(Ping-An)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금융과 의료, 의약 및 헬스케어, 그리고 다양한 업권 간 협업을 통해서 One-Stop 헬스 서비스 플랫폼 평안굿닥터(Ping An Good Doctor)를 구축했다(그림 5). 평안굿닥터는 중국 최대 온라인 원격진료 플랫폼으로 급부상해 매일 65만 건 이상의 의료 상담이 이루어지며, COVID-19 이후로는 이용자가 10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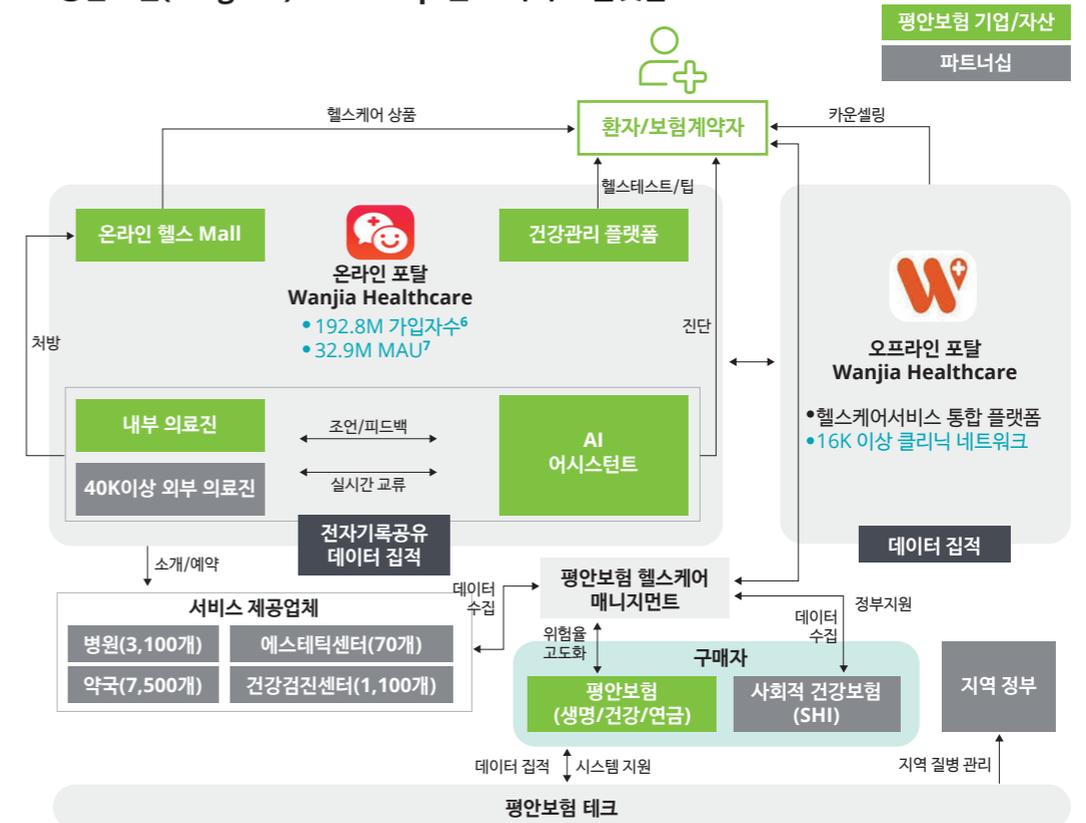
평안굿닥터는 자체 의료진과 외부 협력 병원의 풍부한 의료 자원을 기반으로 온라인 진료, 자문, 입원 수속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약국과 건강검진기관을 포함 다양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축적 및 활용이 가능하다.

플랫폼 내 전문 의료인 내재화: AI 기반의 의료서비스 어시스턴트 'AI 닥터'는 세계적인 인공지능 전문가 200 명이 개발한 시스템으로서, 3억 건의 진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성됐으며, 2,000여 질환에 대해 진단을 내릴 수 있고, 수만 종의 질병에 대한 환자의 질의에 즉시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내부 의료진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 업체와 파트너십: 다수의 의료 서비스 제공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고, 전자의료기록 공유를 통한 표준화된 데이터의 효율적인 집적이 가능하다.

정부와 협력 체계 구축: 중국 도시인구의 75%에 달하는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질병 관리에 기여한다.

그림 5
평안보험(Ping-An) One-Stop 헬스 서비스 플랫폼⁵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 소개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금융부문 전문가들은 은행, 보험, 증권, 캐피탈, 신용카드, 자산운용 등 금융산업에 대한 축적된 다양한 업무수행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의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선진화된 회계감사, 세무자문, 재무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다 심도 있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에 특화된 금융산업을 별도로 조직·운영함으로써 풍부한 인력을 이용해 고객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성훈 본부장
딜로이트 고객산업본부 본부장

T : 02-6676-1551
E : sunoh@deloitte.com

- 국내 글로벌 대기업 국내의 M&A 자문
- 국내 글로벌 대기업 구조조정 자문
- 국내 글로벌 대기업 해외 진출 자문



신병오 총괄리더
금융산업(FSI) 부문 리더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T : 02-6676-1225
E : byoshin@deloitte.com

- 금융기관 외부감사 및 회계자문
- 국내 선도 보험사 IFRS 17 도입 전략 및 시스템 구축 컨설팅
- 기타 경영실사 및 경영전략 컨설팅



문희창 파트너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T : 02-6676-1165
E : hmun@deloitte.com

- 금융지주 인수실사
- 보험사 손익변동성 관리전략
- 금융지주 변동성 관리전략



석혜정 파트너
딜로이트 컨설팅

T : 02-6676-3685
E : hyseok@deloitte.com

- 금융권 비즈니스 전략
- 금융기관 Digital 신사업 전략
- 금융기관 해외 GTM (Go-To-Market) 전략 컨설팅



준승호 파트너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T : 02-6676-1231
E : keushin@deloitte.com

- 금융기관 IFRS 외부감사
- 금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 IFRS 9 시스템 구축 자문



안상혁 파트너
딜로이트 컨설팅

T : 02-6676-3625
E : anghyan@deloitte.com

- 금융기관 운영혁신(Operation Transformation)
- 금융기관 ISP/PI
- 금융기관 Compliance & Risk



공선희 파트너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T : 02-6676-1264
E : sgong@deloitte.com

- 금융기관 K-GAAS/PCAOB 외부감사
- 은행 Private Accounting
- 금융기관 내부통제 자문



구본재 부사장
딜로이트 컨설팅

T : 02-6676-3636
E : bonjkoo@deloitte.com

- 금융 비즈니스 전략
- Digital CX, My Data & Big Data 컨설팅



이대희 수석위원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T : 02-6676-1262
E : daehlee@deloitte.com

- 보험사 손익변동성 관리, 가점관리 고도화
- 금융기관 통합리스크, ALM, 파생 평가 및 헷지 전략



이동영 파트너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재무자문본부

T : 02-6676-2304
E : dongylee@deloitte.com

- 금융기관 M&A 자문
- 금융기관 해외 자회사 인수 자문
- 금융기관 COVID-19 관련 기업평가 및 구조조정



김경호 파트너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T : 02-6676-1230
E : kyoungkim@deloitte.com

- 금융기관 Private Accounting/국내외 금융기관 외부감사
- IFRS 17 도입 전략 및 영향분석 컨설팅
- LIBOR 금리전환 대응



김수환 파트너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리스크자문본부

T : 02-6676-2152
E : soohwakim@deloitte.com

- Basel III 도입 시스템 구축
- 보험사 K-ICS 도입 시스템 구축
- 국내 선도 보험사 IFRS 17/IFRS 9 시스템 구축 컨설팅



조태진 파트너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T : 02-6676-3322
E : tajo@deloitte.com

- 금융지주 K-GAAS/PCAOB 외부감사
- 금융기관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최국주 파트너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T : 02-6676-2439
E : kchoi@deloitte.com

- 금융기관 세무조정 및 자문
- 금융기관 합병 분할/인수 관련 세무자문
- 금융기관 세무진단/세무조사지원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금융산업(FSI) 소개



한유기 파트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T: 02-6676-1257
E: yhan@deloitte.com

- 국내 선도 보험사 IFRS 17/IFRS 9 시스템 및 회계정책 구축 자문
- 보험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 금융기관 실사 및 구조조정



허호영 파트너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T: 02-6676-1180
E: hheo@deloitte.com

- 보험사 IFRS 17/IFRS 9 시스템 및 회계정책 구축 자문
- 국내 주요 금융기관 감사
- 보험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



함현중 수석위원
딜로이트 인사이트 금융산업(FSI) 총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회계감사본부
T: 02-6676-1136
E: hhahm@deloitte.com

- 금융기관 자본관리 전략 컨설팅
- 국내 선도 보험사/재보험사 ERM/K-ICS/IFRS 17 시스템 구축 컨설팅
- 금융기관 리스크 전략 및 건전성 규제 대응 컨설팅

Deloitte.

Insights



Follow @DeloitteInsight



www.linkedin.com/company/deloitte-insights



Download the Deloitte Insights ap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